

서 울 ~ 양 주 고 속 도 로 민 간 투 자 사 업
전 략 및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1. 03.

제1장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1 사업의 목적

가. 기존 상위계획 대체 고속도로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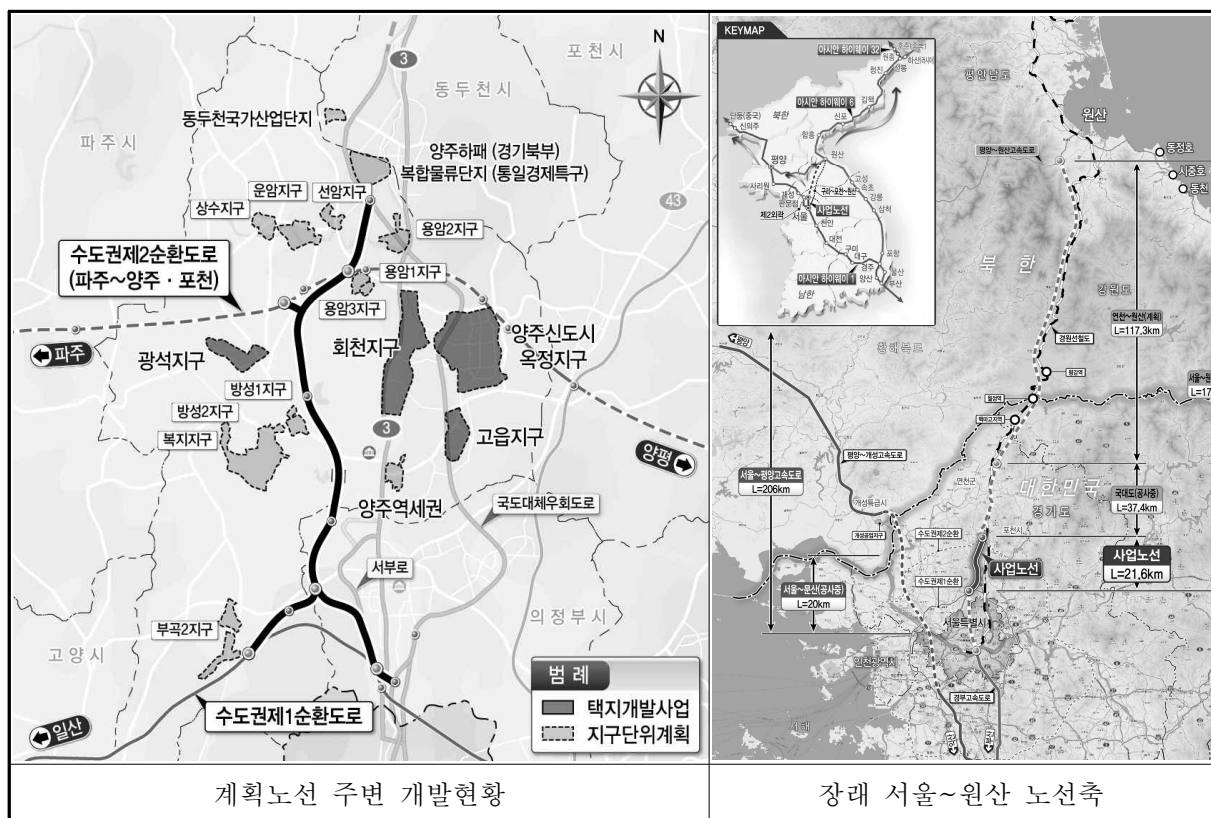
- 기존 상위계획의 효율적인 대체 고속도로
 - 기존 상위계획(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2017.01)의 남북 3축인 서울~연천 구간은 경기 북부와 수도권 동부와의 연계성이 미흡하며,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장기보류 중으로 조기실현이 곤란함(총 25개 사업 중 남북 3축인 서울~연천 구간은 우선순위 21위로 재정사업 추진 불투명)

※ 제안 사업노선 경제성 분석결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B/C 1.25) 확보



나. 경기 북부지역(한반도 북측 포함) 균형발전 토대 마련

- 경기 북부권의 수도권 제1순환 및 제2순환 고속도로 연결 강화
 - 현재 경기 북부권의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및 제2순환 고속도로 연결체계가 미흡하여 본 사업노선 건설을 통한 연계성 강화
- 경기 북부권의 지역 균형발전(불균형 개선 등) 도모
 - 경기 북부권은 국도 3호선을 기준으로 동측 권역 편중 개발이 날로 심화
 - 부족한 경기 북부와 수도권 동부지역 연계성을 강화하여 경기 북부지역에 부족한 광역교통 인프라 조기 공급
 - 사업권역(국도3호선 서측)은 최근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다수의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광역교통망을 공급하여 경기 북부 균형발전 도모
- 장래 서울~원산 노선축 초석 마련
 - 수도권에서 최단 거리로 북측 원산 및 금강산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노선으로 장래 남북교류 활성화 촉진 가능
 - 현재 남북간 도로사업으로 진행중인 서울~평양고속도로와 더불어 향후 금강산 국제관광 지구를 연결하는 한반도 경제개발 노선축으로 활용 가능



1.2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시근거

-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도로)에 대한 민간투자 제안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제2항,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에 따라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표 1.2-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	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	2. 개발기본계획 가. 도시의 개발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u>민간부문 제안사업</u>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u>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지하기 전</u>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금회
환경영향평가	5. 도로의 건설사업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사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향후 시행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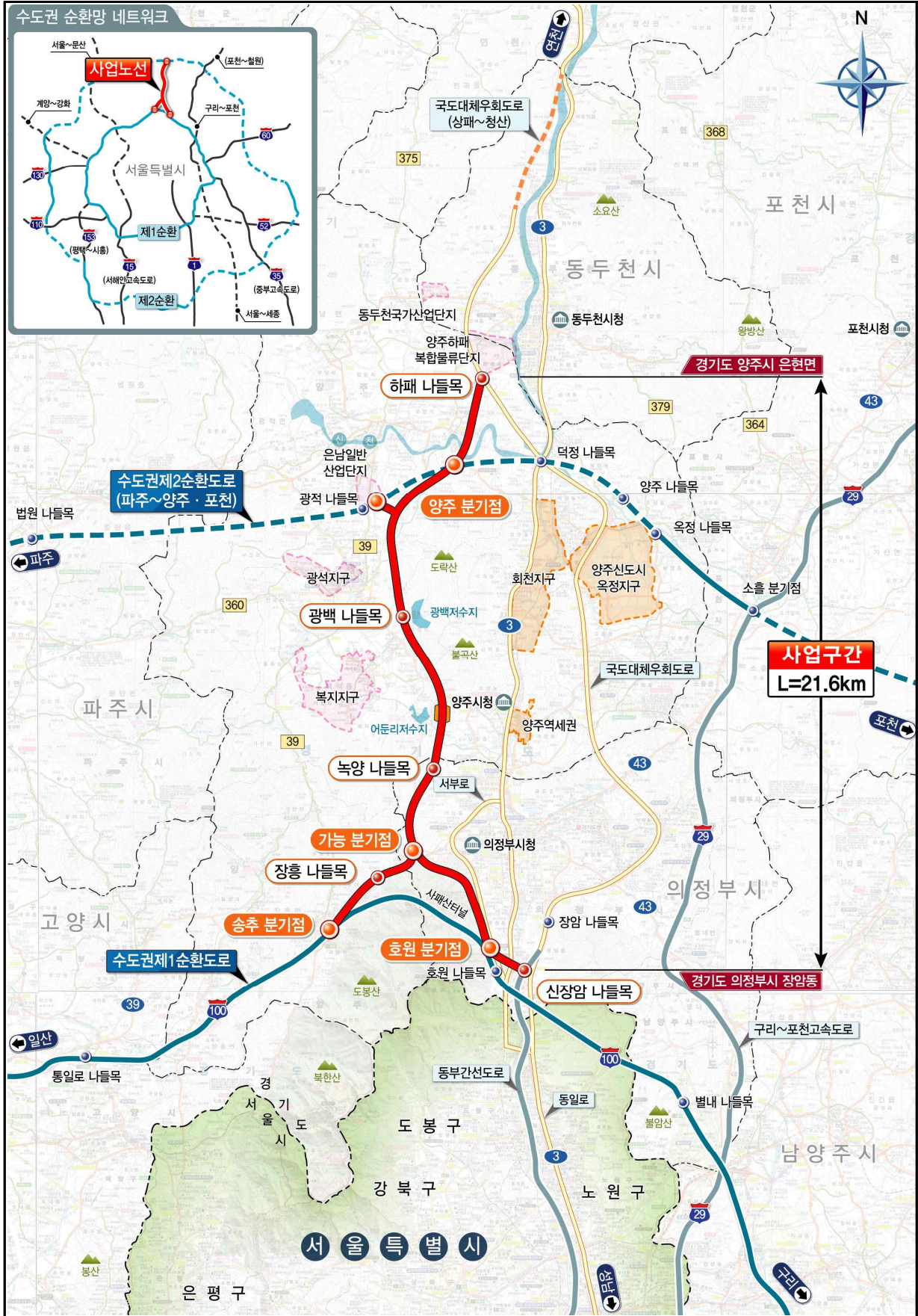
- 주) 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별표 2]
2.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별표 3]

마. 주요 시설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 로		고속도로		
연 장		21.6km		본선 기준
설계속도	본선	100~120km/h		
	지선	80km/h		
횡단구성	차로 수	4차로		
	차로 폭	3.6m		
	중앙분리대		3.0m	
	길어깨	오른쪽	3.0m	
		왼쪽	1.2m	분리구간
구조물	교량	본선	6개소 / 1,500m	
		연결로	14개소 / 1,185m	
	터널	2차로	4개소 / 4,238m	양주방향 기준
토 공	땅깎기		541.8만 m ³	자연상태
	흙쌓기		434.1만 m ³	다짐상태
	사 토		17.8만 m ³	
	암매각		183.4만 m ³	
유·출입시설	분기점		4개소	
	나들목		5개소	
영업시설	본선		3개소	
	나들목		2개소	
유지관리사무소		1개소		
휴게소		1개소		

바. 관련 기관

- 계획시행자 : (가칭)서울~양주 고속도로(주)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그림 1.3-1] 사업노선도(계획)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5조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11인(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주민 대표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1년 2월 15일 ~ 2021년 2월 25일
- 결정사항 : 대상지역의 설정,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 ③ 환경영향평가협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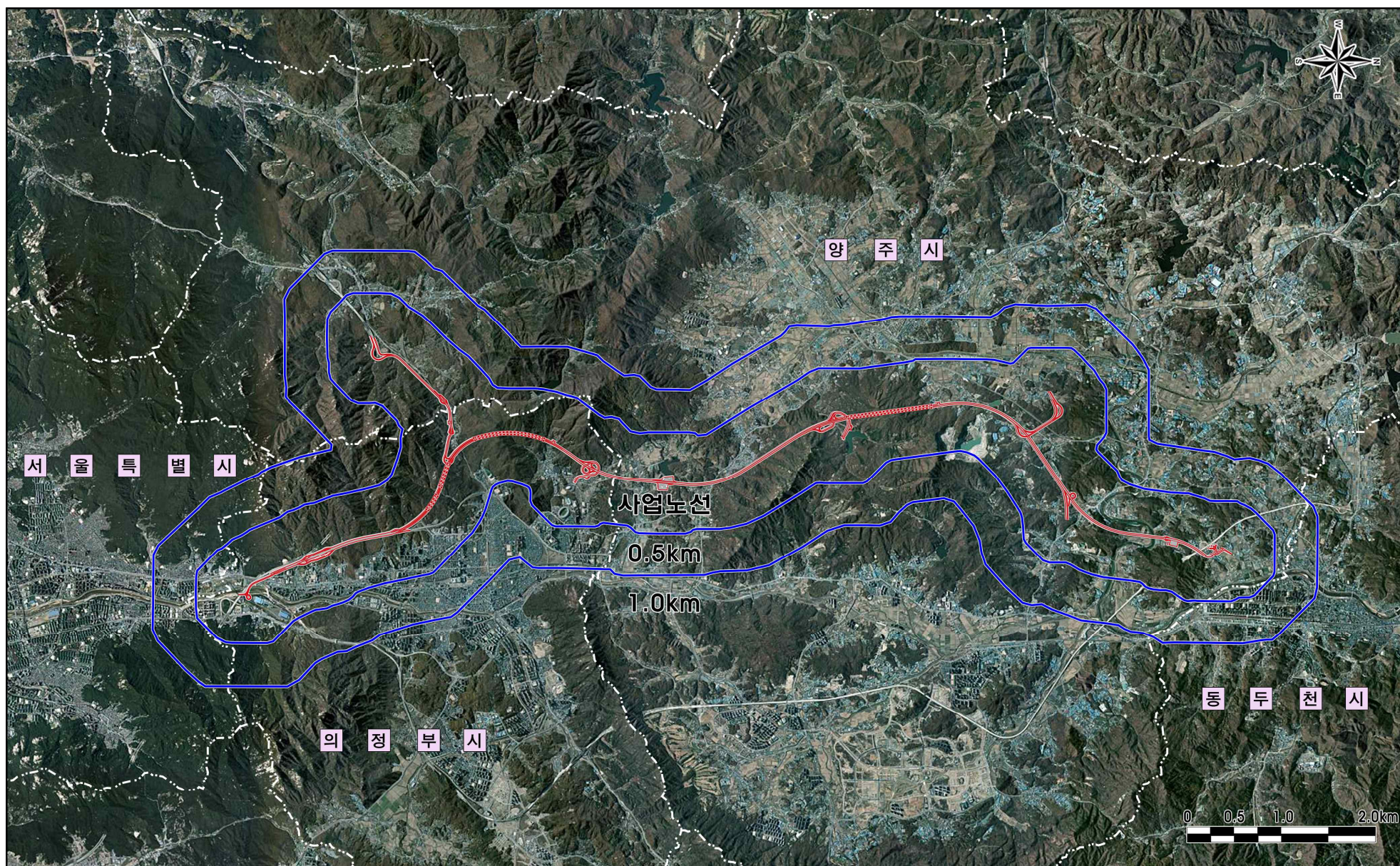
2.2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2.1 평가대상지역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 주요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으로 구분하고 공사시 및 운영시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함

<표 2.2-1>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구 분		대상지역 설정	설정사유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사업노선 및 주변 1.0km	○ 동·식물 서식처 훼손 등 직·간접적 영향 ○ 광역조사 : 1.0km 이내 ○ 현지조사 : 식물상, 식생(노선좌우 150m), 포유류(500m), 조류(500m), 양서·파충류 및 육상곤충(150m), 어류(상·하류 100m),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및 부착조류 등(상·하류 100m)
	자연환경자산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사업시행으로 인한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 자산에 미치는 영향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사업노선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 변화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사업노선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수환경의 보전	수 질	사업노선 및 주변 수계	○ 공사시 강우에 따른 토사유출, 터널공사시 터널 폐수 발생,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 ○ 운영시 오수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
	수리·수문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사업노선 인근 기상현황 조사
	대기질	사업노선 주변 500m	○ 공사시 토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 운영시 통행차량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소음·진동	사업노선 및 주변 500m	○ 공사시 건설기계 가동 및 발파 소음·진동 발생 ○ 운영시 통행차량에 의한 도로교통소음 발생
	토 양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공사시 장비 운행 및 편입지장물에 의한 지정폐기물 등 폐기물 발생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공사시 공사인부 및 건설기계운용에 의한 생활폐기물, 건설폐재 및 임목폐기물 발생 ○ 운영시(휴게소 등) 폐기물 및 분뇨 발생
	온실가스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공사시 공사장비 연료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 운영시 통행차량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사업노선	○ 토지편입 및 토지이용 변화
	일조장해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영 영향
	인구, 주거, 산업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산업의 변화



[그림 2.2-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2.2.2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가. 평가항목 선정

[1] 전략환경영향평가시

-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분석을 위하여 금회 계획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 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중점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였음

<표 2.2-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구 분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중점	일반	제외	
계획의 적정성			○	-	-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 검토
입 지 의 타 당 성	자 연 환경의 보 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	-	○ 계획시행시 자연환경자산 등 각종 보호지역(야생생물보호구역 등)에 대한 영향 예상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 서식지와 생물다양성 변화 예상 ○ 각종 보호생물종의 서식 및 영향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	-	○ 지형·지질 변화와 생태축 단절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예상
		수환경의 보전	○	-	-	○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수계의 영향 예상 ○ 계획시행으로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예상 ○ 운영시 오수발생 및 연계처리 가능여부 검토 필요
	생 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	-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시 대기질 배출 변화, 토양오염 유발요인 검토, 소음·진동 영향 등 예상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	-	○ 계획시행시 오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가능여부 및 자체처리 검토 ○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발생 및 자원활용계획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	-	○ 계획시행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 예상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 화 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	-	○ 계획시행시 토지이용변화 발생 예상 ○ 인구, 주거, 산업의 변화 예상

[2] 환경영향평가시

- 평가항목의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20-289호), 2020.12.22, 환경부」을 참고하여, 사업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음

<표 2.2-3>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구 분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중점	일반	제외	
자연생태 환경	동 · 식 물 상	○	-	-	○식물상, 식생 및 동물상의 변화
	자 연 환 경 자 산	○	-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자산 훼손여부 파악
대기환경	기 상	-	○	-	○대기질 항목의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대 기 질	○	-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발생
	악 취	-	-	○	○본 사업으로 인한 악취 유발요인 없음
	온 실 가 스	○	-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수환경	수질(지표·지하)	○	-	-	○공사시 및 운영시 주변 수계에 미치는 수질영향 검토
	수 리 · 수 문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리·수문의 변화 검토
	해 양 환 경	-	-	○	○사업계획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아 해양환경의 유발요인이 없음
토지환경	토 지 이 용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토 양	○	-	-	○공사시 및 운영시 토양오염 영향 여부 파악
	지 형 · 지 질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
생활환경	친환경적자원순환	○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소 음 · 진 동	○	-	-	○공사시 소음·진동 및 운영시 도로교통소음 발생
	위 락	-	-	○	○사업시행과 연관된 위락 유발요인이 없음
	경 관	○	-	-	○절·성토 및 구조물 입지로 인한 경관 변화 발생
	위 생 · 공 중 보 건	-	-	○	○본 사업으로 인한 위생·공중보건 유발요인이 없음
	전 파 장 해	-	-	○	○본 사업으로 인한 전파장해 유발요인이 없음
	일 조 장 해	○	-	-	○일부 교량통과에 따른 일조장해 영향 검토
사회·경제 환경	인 구 · 주 거 · 산 업	-	○	-	○본 사업으로 인구·주거·산업의 긍정적·부정적 변화요인 검토

나. 평가범위 및 방법설정

- 본 사업의 환경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 조사는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계획임.
- 영향예측은 조사시 파악된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기

[가] 평가항목별 범위 및 방법

<표 2.2-4> 평가항목별 조사·예측 방법(전략환경영향평가 [1/2])

구 분	조사계획	영향예측방법
계획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상위 및 관련계획 ② 조사범위 :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상위계획 및 현지조사 병행	○ 상위계획, 관련계획 및 사업계획(안)을 통한 예측 - 관련 상위계획과 연계성 및 관련계획과의 조화성 검토, 대안 계획의 적정성 검토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① 조사내용 : 식생현황, 동·식물 서식환경 및 자연환경자산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경계 1.0km 이내 - 광역조사 : 1.0km 이내 - 현지조사 : 식물상, 식생(노선좌우 150m), 포유류(500m), 조류(500m), 양서·파충류 및 육상곤충(150m), 어류(상·하류 100m),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및 부착조류 등(상·하류 100m) ③ 조사방법 : 문헌조사, 탐문조사 및 광역조사·현지조사 구분 실시	○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측 - 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분석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① 조사내용 : 지형 형상, 지질 상황, 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등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생태축 단절영향 예측 - 현지조사 결과와 사업계획을 토대로 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의 영향 유무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① 조사내용 : 주변 경관 및 경관자원 현황 ② 조사범위 : 주요 조망점 ③ 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병행	○ 보전가치가 있는 경관자원 영향 여부 예측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검토
수환경의 보전	① 조사내용 : 지표수 및 지하수 수질 현황, 오염원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하류수계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④ 조사지점 : 지표수질 11지점, 지하수질 3지점	○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 공사시 : 토사유출, 현장사무소 오수 발생 등 주변수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합리식 등 이용) - 운영시 : 수라수문의 변화와 수로단절대책 등 검토, 운영시 오수발생량 및 연계처리 가능여부 검토

<표 2.2-4> 평가항목별 조사·예측 방법(전략환경영향평가) [2/2]

구 분	조사계획	영향예측방법
환경기준 부합성	① 조사내용 : 기상,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현황 등 ② 조사범위 : 계획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③ 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병행 ④ 조사지점 : 대기질 6지점, 토 양 3지점, 소음·진동 6지점	○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배출, 토양오염, 소음·진동발생으로 인한 영향 예측 - 대기질 · 공사장비로 인한 대기오염영향 · 차량통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영향 - 토양 · 공사시 토양오염유발요인 (유사사례 및 관련법규를 통한 검토) - 소음·진동 · 건설기계로 인한 공사장소음·진동 (합성소음도 산출이론, 점음원의 거리감쇠 이론, 진동파의 거리감쇠공식 등 적용) · 차량통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소음 영향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소음 예측 프로그램 KHTN-2007 등 적용)
환경기초시설 적정성	① 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장래 계획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으로 인한 건설폐기물, 임목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계획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① 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온실가스 배출현황 등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 변화 예측 및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 검토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토지이용계획(녹지계획) 등 예측·검토

[나] 환경 현황조사계획

<표 2.2-5> 환경 현황조사 항목 및 조사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구 분	조사항목	조사횟수 / 조사지점
동·식물상	○ 육상식물상 : 식물상, 식생(수생식물포함) ○ 육상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 육수생물상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2회 /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경계 1.0km
대기질	○ SO ₂ , CO, NO ₂ , PM-10, PM-2.5, O ₃ , Pb, 벤젠	2회(2계절, 계절별 3일) / 6지점
지표수질	○ 수온, 유량, pH, BOD, COD, TOC, SS, DO, T-P, 총대장 균군, 분원성대장균군, Cd, As, CN, Hg, 유기인, PCB, Pb, Cr ⁶⁺ , ABS,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PCE, 디클로 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DEHP, T-N, NH ₃ -N, NO ₃ -N, NO ₂ -N, PO ₄ -P, 페놀, 클로로필-a	1회 / 11지점
지하수질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Cd, As, CN, Hg, 페놀, Pb, F, Cr ⁶⁺ , NH ₃ -N, NO ₃ -N, 경도, KMnO ₄ 소비량, 냄새, 맛, Cu, 색도, ABS, pH, Zn, Cl ⁻ , 중발잔류물, Fe, Mn, 탁도, SO ₄ ²⁻ , Al	1회 / 3지점
토 양	○ Cd, Cu, As, Hg, Pb, Cr ⁶⁺ ,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 CN,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1회 / 3지점
소음·진동	○ 소음(주간 4회, 야간 2회) ○ 진동(주간 2회, 야간 1회)	1회 / 6지점

[2] 환경영향평가시

[가] 평가항목별 범위 및 방법

<표 2.2-6> 평가항목별 조사·예측 방법(환경영향평가) [1/2]

구 분	조사계획	영향예측방법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① 조사내용 : 자연현황(식생현황, 수변습지 등의 분포,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서식환경 등) ② 조사범위 :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경계 1.0km 이내 - 광역조사 : 1.0km 이내 - 현지조사 : 식물상, 식생(노선좌우 150m), 포유류(500m), 조류(500m), 양서·파충류 및 육상곤충(150m), 어류(상·하류 100m,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및 부착조류 등(상·하류 100m)) ③ 조사방법 : 문헌조사, 탐문조사, 광역조사 및 현지조사 병행	○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을 파악하여 이들 보호대상이 사업시행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기 상	① 조사내용 : 기상자료 조사·분석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상대 자료 활용 ④ 조사지점 : 주변기상대(인천기상대)	○ 공사시 및 운영시 - 기상현황 분석 - 대기질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① 조사내용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대기질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경계로부터 500m 이내 ③ 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병행 ④ 조사지점 : 대기질 6지점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 공사장비로 인한 대기오염영향 - 차량통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영향
온실가스	① 조사내용 : 온실가스 배출량 ② 조사범위 : 운영시 사업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사업계획 검토	○ 공사시 및 운영시 배출계수를 이용한 배출량 예측
수질 (수리·수문)	① 조사내용 : 하천, 지하수에 대한 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사업노선 주변지역의 수계현황 조사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주변 수계 ③ 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병행 ④ 조사지점 : 지표수질 11지점, 지하수질 3지점	○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 예측 ○ 운영시 발생 오수에 의한 총량변화 예측 ○ 개발 전·후 수리·수문변화 예측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사업계획 검토	○ 사업시행 전·후 토지이용 변화 파악
토 양	① 조사내용 : 토양오염도 조사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토양현황파악 ③ 조사방법 : 시료채취 후 실험실 분석 ④ 조사지점 : 토양 3지점	○ 공사시 및 운영시 토양 오염영향 예측

<표 2.2-6> 평가항목별 조사·예측 방법(환경영향평가) [2/2]

구 분	조사계획	영향예측방법
지형·지질	① 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토지 안정성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사업계획 검토	○ 지형의 변화, 지질조사결과 및 사면안정성해석결과 검토를 통한 영향예측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 조사내용 :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사업계획 검토	○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안 검토 -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소음·진동	① 조사내용 : 사업노선 주변 소음·진동도 및 주요 발생원 조사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경계로부터 500m 이내 ③ 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병행 ④ 조사지점 : 6지점	○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영향 예측 - 공사장비로 인한 공사장소음·진동 (합성소음도 산출이론, 점음원의 거리감쇠이론, 진동파의 거리감쇠공식등 적용) - 차량통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소음 영향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소음 예측프로그램 KHTN-2007, 필요시 소음 모델 등 적용)
경 관	① 조사내용 :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 검토	○ 자연의 훼손정도, 조망의 변화 예측 -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변화 검토
일조장해	① 조사내용 : 일영영향 조사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 검토	○ 구조물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일조영향 예측 - 일영해석 프로그램을 통한 일영변화 검토

<표 2.2-7> 환경현황조사 항목 및 조사계획(환경영향평가)

구 분	조사항목	조사횟수/조사지점
동·식물상	○ 육상식물상 : 식물상, 식생(수생식물포함) ○ 육상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 육수생물상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2회 /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경계로부터 1.0km)
대기질	○ SO ₂ , CO, NO ₂ , PM-10, PM-2.5, O ₃ , Pb, 벤젠	2회 (2계절, 계절별 3일) / 6지점
지표수질	○ pH, 수온, 유량, BOD, COD, TOC, DO, SS,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T-N, T-P, Cd, As, CN, Hg, 유기인, PCB, Pb, Cr ⁶⁺ , ABS,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PCE,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DEHP, NH ₃ -N, NO ₃ -N, NO ₂ -N, PO ₄ -P, 페놀, 클로로필-a	2회 / 11지점
지하수질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Cd, As, CN, Hg, 페놀, Pb, F, Cr ⁶⁺ , NH ₃ -N, NO ₃ -N, 경도, KMnO ₄ 소비량, 냄새, 맛, Cu, 색도, ABS, pH, Zn, Cl ⁻ , 중발잔류물, Fe, Mn, 탁도, SO ₄ ²⁻ , Al	2회 / 3지점
토 양	○ Cd, Cu, As, Hg, Pb, Cr ⁶⁺ ,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 CN,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2회 / 3지점
소음·진동	○ 소음(주간 4회, 야간 2회) ○ 진동(주간 2회, 야간 1회)	2회 / 6지점

2.2.3 대안의 설정 및 검토

가. 대안의 종류 및 설정

- 본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2020.12.22.」,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환경부고시 제2015-160호), 2015.9.1.」을 참고하여 설정하였음

<표 2.2-8>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

대안의 종류	대안 설정방법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Action)으로 선정
노선비교	· 상기 계획비교를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표 2.2-9> 대안의 설정

대안종류	대안의 설정
계획비교	· 대안1 : 현 상황 유지(No Action) · 대안2 : 본 계획 수립(Action)
노선비교 (대안2)	· 계획노선 비교 - 대안A - 대안B - 대안C

[1] 계획비교

- 현 상황을 유지(No Action)하는 방안과 본 계획을 수립(Action)하는 방안에 대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비교 분석함
- 계획비교는 본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대안1)와 수립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대안2)를 비교하여 대안으로 선정함

[2] 노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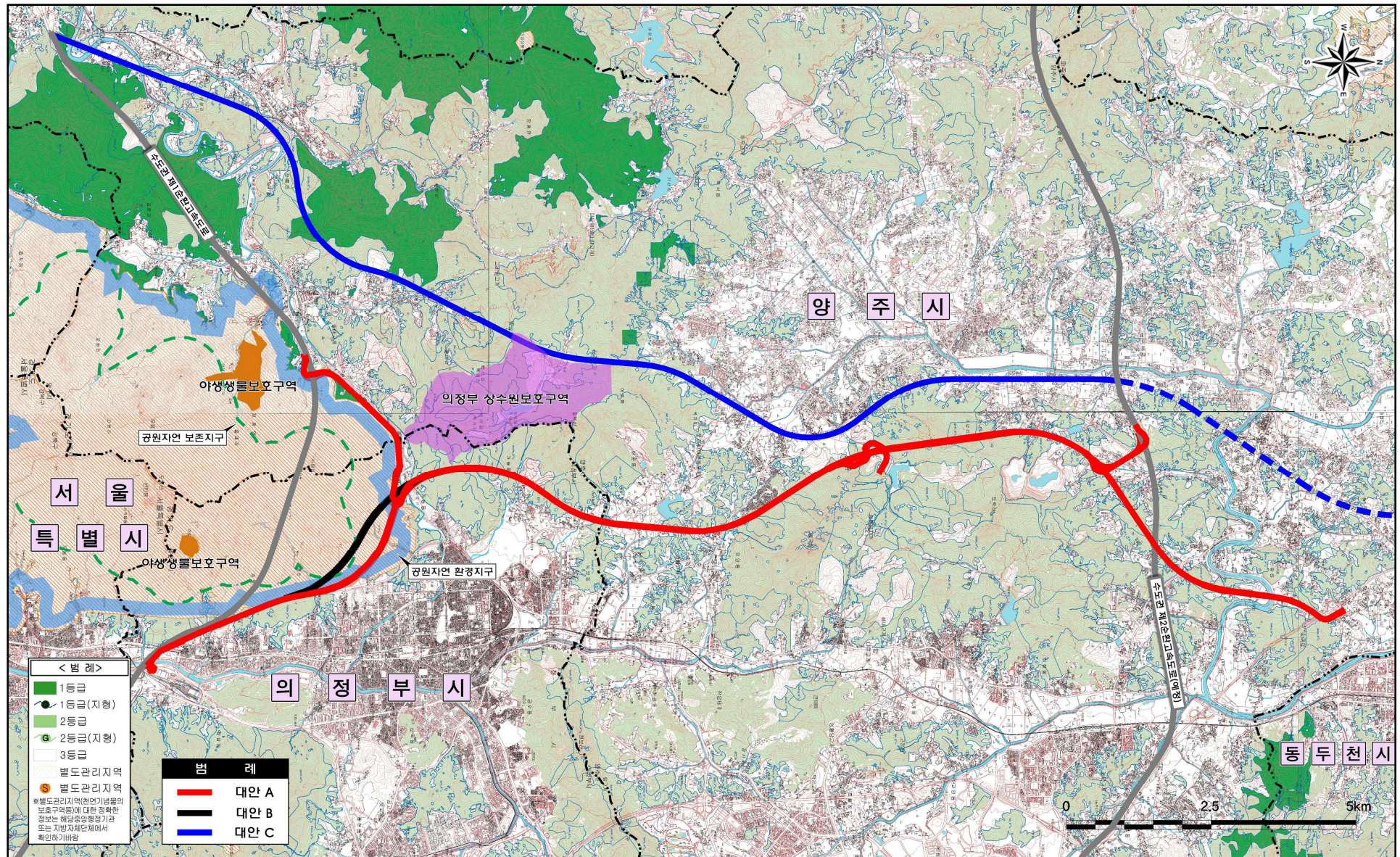
- 사업노선 통과지역 및 주변 자연환경과 개발여건 등 주변 상황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노선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함
- 향후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업노선(안)에 대하여 입지여건, 자연 경관성, 접근성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후 장·단점을 비교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함

나. 대안검토 결과

(1) 대안별 비교·검토 결과

<표 2.2-10> 대안별 비교·검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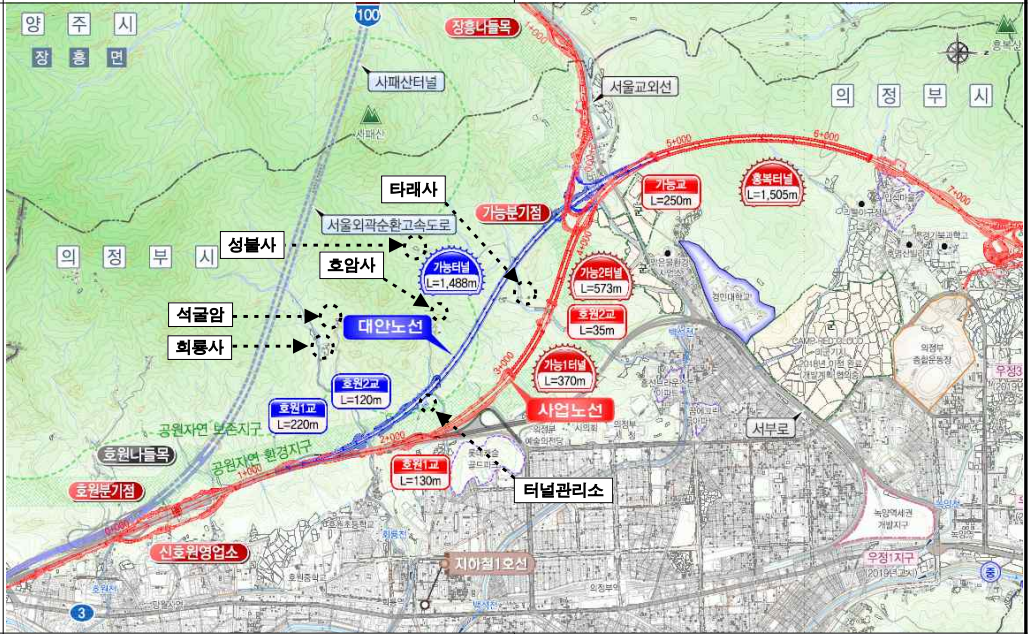
구 분		대안1 (현 상황 유지)	대안2 (본 계획 수립)		
			대안A (사업계획 노선)	대안B (사업검토 노선)	대안C (기반영 상위계획 노선)
연 장		—	21.6km	21.42km	22.1km
추정 사업비(공사비)		—	5,490억원	5,637억원	8,751억원
특 징	환경적 측 면	—	- 공원자연 보존지구 우회, 공원자연 환경지구 최소 저촉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통과 - 북한산국립공원(생태자연도 별도관리지역) 외곽 일부 저촉 - 한북정맥 통과 - 사갱 및 수직갱 설치 불필요 - 대안B에 비해 지하수 유출 최소화 가능(차수공법 등 적용 용이)	- 공원자연 보존지구 통과, 공원자연 환경지구 저촉 - 북한산국립공원(생태자연도 별도관리지역) 일부 저촉 - 한북정맥 통과 - 북한산 국립공원(사패산) 내 장대터널 설치로 환기를 위한 사갱 및 수직갱 설치가 필요하여 진입로 등으로 인한 추가훼손 우려 - 대심도 터널 통과에 따른 지하수 과다유출 우려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통과 - 의정부 상수원보호구역 통과 - 한북정맥 통과 - 홍복산 통과구간 내 장대터널 설치로 환기를 위한 사갱 및 수직갱 설치가 필요하며 진입로 등으로 인한 추가훼손 우려 - 대심도 터널 통과에 따른 지하수 과다유출 우려
	경제적 측 면	경기 북부 지역발전 불균형	- 경기 북부 지역발전 불균형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주변 도로 교통량 분산 효과 및 지역통행 개선 - 경제적 타당성(B/C 1.25) 확보	- 경기 북부 지역발전 불균형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주변 도로 교통량 분산 효과 및 지역통행 개선 - 경제적 타당성 확보	- 공사비 전액 국고 부담 -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재정사업 추진 불투명
	기술적 측 면	—	- 기반영 상위계획노선 대체 - 산림지역 터널통과	- 기반영 상위계획노선 대체 - 산림지역 터널통과	- 상위계획(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기반영 - 산림지역 터널통과 - 군 공용화기사격장 저촉
	사회적 측 면	- 국도3호선 동측으로 편중개발 심화 - 광역적 접근성 및 개발압력에 따른 대차 미흡으로 민원발생 우려	- 기존 상위계획의 수도권 동부 연계성 부족문제 해소 - 지역주민 민원 조기 해소	- 기존 상위계획의 수도권 동부 연계성 부족문제 해소 - 지역주민 민원 조기 해소	- 수도권 서부 편중으로 국가순환망 연계성 부족 - 재정사업 추진 불투명으로 지역주민 민원 지속 발생
검 토 결 과		2개의 사업노선(안)과 기반영 상위계획 노선에 대한 대안별 비교·검토 결과, 의정부 상수원보호구역을 회피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훼손을 최소화하며, 지역주민 민원을 조기 해소할 수 있는 대안A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2] 대안별 주요 환경보호지역 통과 현황

[2] 대안 A·B 비교·검토 결과

<표 2.2-11> 대안 A·B 비교·검토 결과

구 분	대안 A(사업노선)	대안 B(대안노선)
비교 노선도		
총연장 (검토연장)	21.6km (3.194km)	21.42km (3.162km)
추정 사업비(공사비)	81,976백만원 (5.100km)	96,661백만원 (5.100km)
구조물	· 교량(3개소), 터널(2개소)	· 교량(3개소), 터널(1개소)
국립공원 통과현황	· 공원자연보존지구 : 미저촉 · 공원자연환경지구 : 3.194km (STA.0+946~4+140)	
	· 합계 : 3.194km	
	· 공원자연보존지구 · 터널 : - · 교량 : - · 토공 : - · 합계 : -	· 공원자연보존지구 · 터널 : 0.493km · 교량 : - · 토공 : 0.367km · 합계 : 0.860km
	· 공원자연환경지구 · 터널 : 0.921km · 교량 : 0.165km · 토공 : 2.108km · 합계 : 3.194km	· 공원자연환경지구 · 터널 : 0.995km · 교량 : 0.340km · 토공 : 0.967km · 합계 : 2.302km
특징	· 공원자연 보존지구 우회 · 공원자연 환경지구 저촉 · 주변 종교시설 다수 위치 : 대안B에 비해 종교시설이 이격되어 계획	· 공원자연 보존지구 저촉 · 공원자연 환경지구 저촉 · 주변 종교시설 다수 위치 : 호암사, 의정부회룡사(석굴암 및 오층 석탑), 대한불교조계종성불사 등 · 장대터널 설치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구 내 터널관리소 설치



[그림 2.2-3] 사업노선도(대안A)

2.2.4 주민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법 제13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고·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의정부시, 양주시, 서울시(노원구, 도봉구), 동두천시 홈페이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의정부시, 양주시, 서울시 노원구·도봉구, 동두천시)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의정부시, 양주시, 서울시(노원구, 도봉구), 동두천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
-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별도의 개최요구가 있을시 다음과 같은 사항일 경우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또한, 본 계획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이 의견수렴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여(자연환경보전지역)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표 2.2-12>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구 분	포함여부	비 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북한산 국립공원
○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X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X	

2.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결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의견서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기질, 소음·진동, 지형·지질 등 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는 계획 노선 및 주변의 정온시설 분포현황, 지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 2. 대안 - 북한산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노선과 한북정맥 통과구간을 터널화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가하여 우선 검토 3.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동·식물상 조사는 야생생물의 이동 특성(번식기 등), 개화기 등을 고려하여 2회 이상 실시 - 대기질 현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 - 현황조사(대기질, 수질, 동·식물상, 소음·진동 등) 지점은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을 고려하여 충분히 선정 나. 환경영향평가 -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 현황조사는 계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조사 - 사업지역 주변 주거지역, 학교 등 정온시설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영향예측을 빠짐없이 실시 - 계획노선 주변에 운영 및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누적 영향을 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 총괄의견

-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것으로 아래 항목별 의견을 반영하지가 바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3. 대안
 - 대안설정이 타당함.
 - 다만, 대안(A) 사업노선에 대하여 우리 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용역에 따른 시 전역에 대한 비오름 평가가 완료된 상태로 향후 해당 노선에 대한 비오름 평가등급 현황 조사 및 그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강구 필요 함.
 - 사업노선 중 우리 시 지역 북한산 국립공원구간에 대하여 향후 국립공원관리 주체의 의견반영이 필요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 동·식물 상 조사 시(2회) 동·식물의 특성(민식기, 산란기 등)과 계절적 특성(어류 조사 시 겨울철 체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종을 조사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반영하기 바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이 적절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1. 2. 23.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 총괄의견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등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영향, 공사장 소음·진동, 도로교통소음 등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정온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계획노선에 대한 노선선정시 북한산국립공원 및 임야구간 통과구간의 우수한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터널, 교량, 생태터널, 등에 다양한 저감방안을 비교·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함
3. 대안
 - 대안 B, C에 비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의정부 상수원보호구역에 회피할 수 있는 대안A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구간이 북한산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이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검토가 필요함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선정된 노선을 토대로 자연환경우수지역, 정온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시행시 목표기준을 설정하여 사업 시행시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평가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별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대상지역 인근 주민의견을 적극 적으로 청취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내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상세히 제시 하여야 함

2021. 2.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 총괄의견

- 본 의견은 경기도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21.6km)하는 사업으로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대안마련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환경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 하고, 평가항목별 영향권 범위설정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 주변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누적 영향평가 실시
2. 토지이용 구상안
 - 기존 도로 및 철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 영향을 예측·검토하고 환경적 악영향이 우려되는 구간의 위치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대안
 - 계획의 목적, 주변 토지이용상황, 입지 여건 및 환경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와 다양한 대안을 검토·제시하고, 각 대안별 선정 사유와 최종안을 제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 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동·식물상) 법정보호종 등 동·식물 조사는 생물·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생물의 서식 및 이동변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산림지역 및 녹지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생태적 단절 및 영향이 예상되는 생물군을 제시
 - (대기질, 온실가스) 공사 및 운영 시 대기질(온실가스 배출량·수질 포함) 영향

등을 예측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수질, 지하수) 터널 폐수, 토사, 오수 및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소음·진동) 공사 및 운영 시 주변 정온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발파시행지역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토양, 지형·지질) 사업시행 시 한복정맥을 통과할 계획이므로 절·성토 사면 길이, 높이 등의 현황 및 사면안정성 예측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경관) 사업시행으로 주변지역과의 조화에 영향이 있는 지역(마을을 관통 하는 구간 등), 절·성토 등으로 경관 훼손지역 및 교량설치 지역 등을 조망 점으로 선정하여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라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 여부 검토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함
 6. 기 타
 - 문헌자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 문헌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시 상기 제시된 심의의견의 반영여부를 제시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021. 2.

심의위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 총괄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여 작성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선정

- 의견 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계획노선 통과구간을 대상으로 생태계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의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 검토

3. 대안

- 제시된 대안별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채택하고 환경영향평가시 항목별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되,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 환경영향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근거 기준 등을 제시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1. 2. 17.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 총괄의견

- 백두대간의지류인 한북정맥은 뛰어난 경관과 생태보전지역의 보고임에 생태환경및 녹지축을비롯 생물다양성과 바람길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시 발생할 수있는 자연적환경생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되어야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 한북지역의 불국산 및 도락산의 동물이동로 및 바람길에 유의바람

2. 토지이용 구상안

- 자연생태보존을 최우선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사업노선을 시행하여 추진요함

3. 대안

- 불국산과 도락산의 자연생태및 동·식물들의 서식지등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함이 필요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생태측과 환경영향을 최소화할수있도록 면밀히 조사 및 예측을 세분화하여 시행함이적절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가감없이 청취하여 충분한 설명과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시행에 반영이 필요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불국산과 도락산 통과구간의 동·식물 서식지(군락지)및 환경영향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2021.2.23

심의위원